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정책 건의서

2020. 6.

FP&B KOREA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1. 법안 제정의 의의

- “사전적 보호 - 상품판매 - 사후피해구제”의 금융 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 구축
- OECD가 채택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High Level Principles” 완성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의 범국가적 프레임 구축
 - * G20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금융산업 안정적 성장 견인

2. 법안에 대한 기대

-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 6대 판매원칙 확대로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 제도 신설 등을 통해 금융거래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기대
-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상품자문업 신설과 소비자교육 및 공시 강화를 통한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체감적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 기대
- 신규 금융업종(금융상품자문업)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그동안 자본시장법 하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되어 제공되던 자문서비스가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을 통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업 종사자와 퇴직자를 중심으로 금융상품자문업자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1.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효과

- 금융소비자문제의 사전적 방지
 - 일반 금융소비자도 손쉽게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금융소비자문제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가계의 재무건전성 개선
 -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하여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전략 등의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 개선 가능

2. 하위규정 제정 시 정책 방향

- 금융상품자문업 정착지원 제도 필요
 -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무형의 자문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별도의 자문수수료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움
 - 금융상품자문업이 금융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금융자문의 필요성 확대와 독립적인 금융자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므로 제도 도입 초기 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제도 필요
- 업의 장기적 활성화 기반 필요
 - 장기적으로 금융상품자문업의 지향점은 금융자문서비스 자체를 수입원으로 하여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금융상품자문업의 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여 비용대비 편익 우위적 자문서비스 시장 구축

(정책건의1)

금융상품자문업자 자격요건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민간 전문자격 적극 활용

-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자문 수요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미국 투자자문(RIA) 자격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리즈65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CFP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민간자격은 시험 면제, 일본은 CFP자격을 국가자격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해외에서는 민간의 전문자격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금융상품자문업자 자격요건에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국제공인재무설계사)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가를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여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니즈 충족 필요
 - 또한 이를 통해 금융권 진입 희망자 및 금융권 종사자들의 유사자격 취득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전문성 강화 가능

- 직무역량을 충족하는 다양한 금융전문가의 업계 유인을 통한 업의 활성화
 -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을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가계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이 복합적 상호관계를 가지고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실무적으로 종합재무상담 수요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
 - 이에 상품 유형별 자문에 필요한 업권별 자격요건에 더하여 해당 역량을 갖춘 전문자격을 모든 금융상품유형에 대한 자문업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업계 진입을 유도하고 업의 장기적 활성화 기반 조성

[민간 전문자격 활용에 대한 실무적 고려 방안 제언]

(법률 제2조제5호) 정의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개별 금융관계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금소법에 근거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 제2조제7호아목) 정의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률 제4조제16호)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16.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 법률 제2조제7호아목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자격자를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등으로 규정, 제4조제16호에 근거하여 이들을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

※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취급할 상품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에는 업무의 일부를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럴 경우 (사)한국FPSB가 전문자격의 등록처로 해당 업무의 수탁 가능

※ (사)한국FPSB는 금융위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국내 CFP 자격인증기관(Certifying Body)이며, 자격자의 윤리규제를 담당하는 자율규제기관(SRO, Self-Regulatory Organisation)

(정책건의2)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시 금융소비자 참여

-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금융소비자 의견 청취 및 반영
 - 금융소비자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와의 정보비대칭임
 - 금융회사 시각을 가진 업권별 “협회” 의견만으로 하위규정 제정 시 금소법 입법 의도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할 가능성 다대(多大)
 -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프로세스에 금융소비자 참여 필요

(정책건의3)

금융소외자 등 특정 집단의 금융거래 시 금융상품자문 서비스 제공(바우처 등 활용)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연구에 의하면 금융소비자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투자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
 - 금융소비자보호는 법률에 의한 보편적 예방과 특별히 취약한 집단에 대한 선택적 예방 조치가 동시에 전개되어야 실효성이 높은 바
 - 금융소외계층 등의 금융거래 시 금융상품자문 서비스를 이용(바우처 등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적·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수요 조성 필요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학계 의견

(박영석·원승연·정재만, 2013,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자문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FP학회)

- 금융상품자문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규정하는 조직이 필요함. 금융교육협의회와 유사하게 금융위원회에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업권별 자격시험에 요구되는 역량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CFP, CFA 등과 같은 국제인증자격의 경우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필요 있음. 이들 자격은 기존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역량을 검정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면제하고 있음

(권순현, 2013,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지식과 정보는 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금융교육은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관점도 제기되어 금융소비자 교육보다는 독립적인 금융상품자문의 증대가 실제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변영훈·원승연, 2013, “금융자문업 발전 방향과 금융규제 개편 방안 : 해외 금융자문업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지식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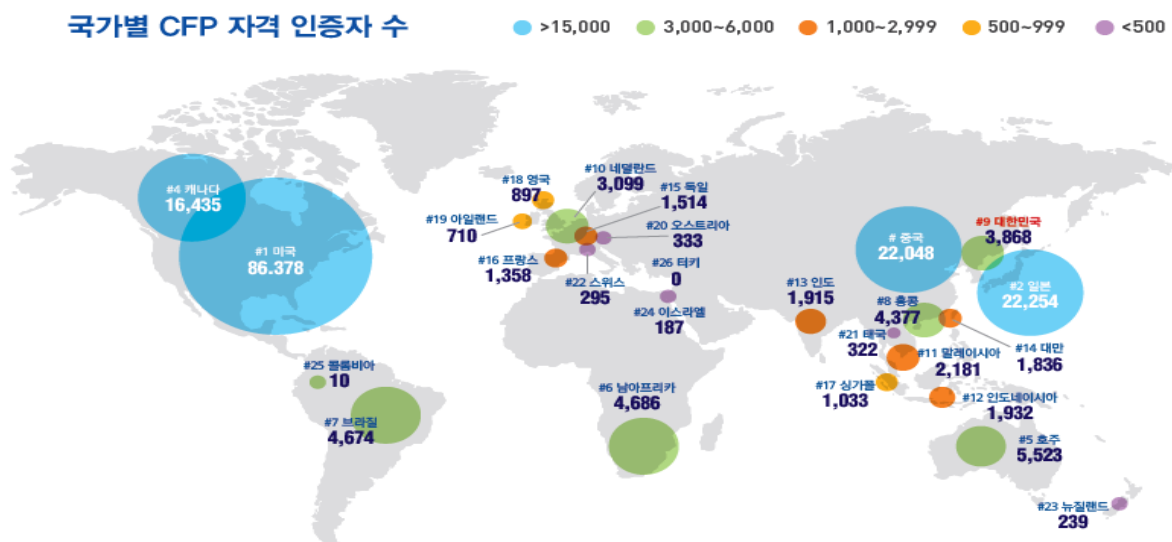
사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상품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 금융상품의 선택을 제한하고 잘못된 자문을 실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금융상품자문업이 아닌 금융자문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신설하고,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 규제를 실행함으로써 시장 내에서의 상호견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유첨. 재무설계와 CFP 자격제도]



1.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 개인/가계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종합재무상담 서비스**로 현금 및 부채관리, 위험관리, 투자, 은퇴, 부동산, 세금 및 상속설계 등 **개인과 가계의 일상 생활에 관련되는 전 분야를 포함**
- **국내에서는 2000년** CFP Board와 업무제휴 및 라이선스 협약(Affiliation &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여 개인재무설계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함
- **CFP 자격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인증요건과 커리큘럼에 따라 전문능력과 윤리성을 겸비한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재무설계사 자격**
- **국내**는 한국FPSB가 국제FPSB와의 협약에 의거 CFP 자격인증과 윤리규제 및 상표를 보호하는 **자율규제적 인증기관(Certifying Body)**으로의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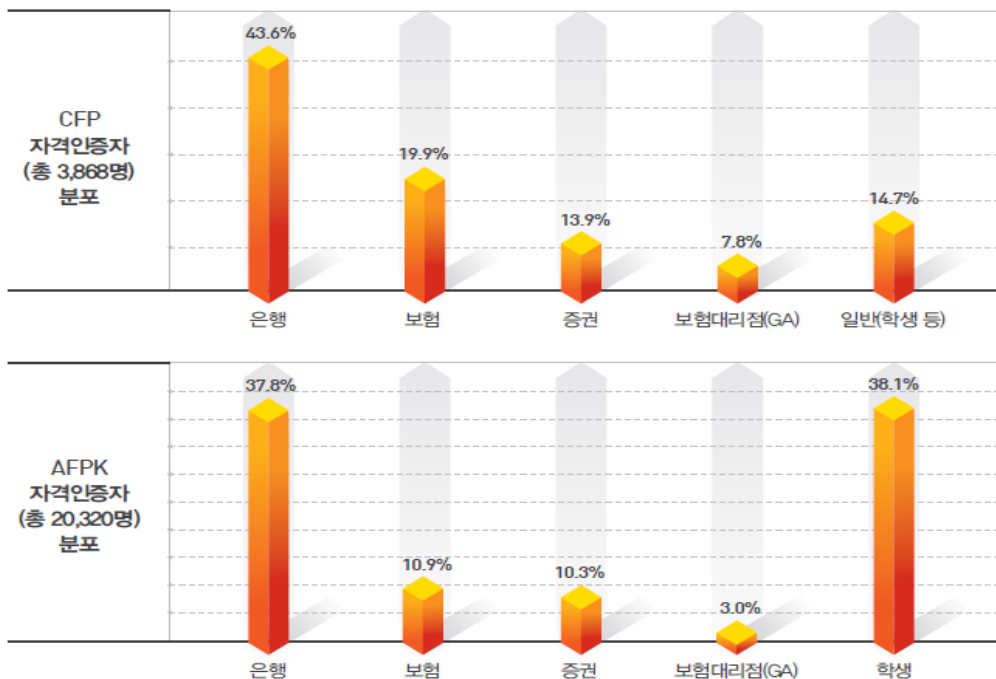
(2019년 말 기준 전세계 CFP 자격자 188,104명, 이중 국내는 3,868명)

2. CFP 자격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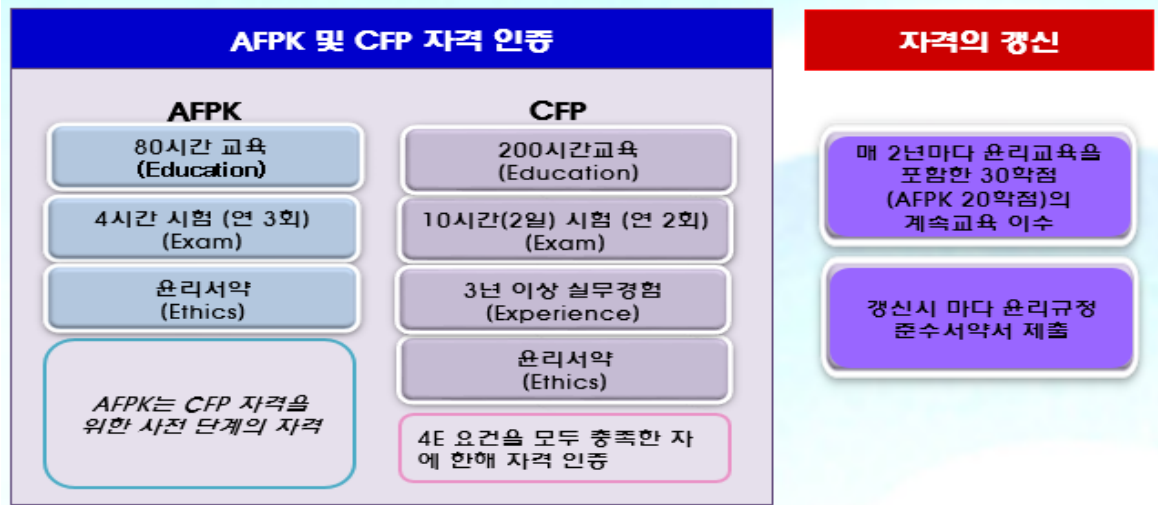


- CFP 자격은 국제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 Board)의 공통된 자격기준에 따라 전 세계 26개국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인증 받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
- CFP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양일에 걸쳐 실시되는 8.5시간의 시험에서 70점 이상 득점하고, 3년 이상 **실무경험과 윤리서약**을 해야 함
- CFP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을 우선적으로 취득해야 함
- 2020년 5월 말 현재 국내에는 각각 **3,868명과 20,320명의 CFP 및 AFPK 자격자가 활동 중임**

(#1. 국내 자격인증자 업종별 분포)



#2. 자격의 인증과 갱신



#3. CFP 자격시험을 위한 학습내용 : 최소 200시간 학습 필수)

과목명	학습내용
재무설계사 직업윤리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한다(Client First)”는 자격인증자의 윤리원칙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전문가가 익혀야 할 윤리규정과 법규
재무설계 원론	고객상담과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내용
회계의 시간가치	재무설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회계의 시간가치를 재무계산기를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인과 사업 위험 등 전반적인 위험관리
투자설계	고객의 재무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
부동산설계	재무설계에서 부동산의 역할과 부동산의 일반적 특징 및 부동산을 활용한 재무목표 달성 방안
은퇴설계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경제 활동기에 준비해야 할 영역과 방법
세금설계	생애 이슈 및 투자설계 관련 고객 상황별 세금 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
상속설계	개인이 과거와 현재까지 축적한 그리고 앞으로 축적할 유무형의 자산을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
개인재무설계 사례	실제 재무설계 현장에서 만나는 일반적 고객 상황을 사례를 통해 간접 체험함으로써 실무적 고객니즈 발굴과 솔루션 제공에 대한 기술을 습득